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	재무과

2017. 9. 22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유준상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15일(금)
- 제출자 : 허정행 의원 외 11명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9월 18일(월)

4. 관계법규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2조
-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」

5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
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6. 주요내용

○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(안 제3조)

-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시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
- 재물조사 대상 물품,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의 경우 제외

○ 공개 범위(안 제4조)

-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
-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
-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며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합산 명기, 교체 발주 시에도 설치비용 공개
-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시 건립비용 공개

○ 공개방법 및 내용(안 제5조)

공 공 시 설 물	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
1. 시설물명 2. 설치일시 3. 시공업체 4. 설치비용 5. 관리부서	1. 공사명 2. 공시기간 3. 발주기관의 명칭 4. 설계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) 5. 감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) 6.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. 건립비용

7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의견으로는

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비용 등 표시의무화는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6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을 개발하여 공유재산의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시설에 표지판 등의 형태로 제작·부착하여 공개함으로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관 계 법령

○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- 제42조(건설공사 표지의 게시)**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, 발주자, 시공자,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, 설계자,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‘공공시설’ 이란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,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시설, 문화·체육시설 및 교량, 주차장,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.
- ‘공공건축물’ 이란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,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, 공공도서관, 공연장, 전시장,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.
- ‘준공석’ 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.
- ‘준공판’ 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.
- ‘건립비용’ 이라 함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건립비용 공개 원칙)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개 범위)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.

-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
-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 1. 공사명
 2. 공사기간
 3. 발주자 기관의 명칭
 4. 설계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 5. 감리자의 성명(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 6.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
 7.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·기술자격종목 및 등급
 8. 건립비용